



가해 운전자 나이와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요약

- 본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사고 심도와 더불어 가해 운전자의 나이,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사고 심도가 유사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은 민원 증가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민원 접수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비교하여 검토함
 - 민원 접수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운전자의 나이,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
- 2016년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민원 없는 사고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인배상 변동성이 민원의 원인일 수 있음
 -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보다 평균 수준도 높고(1.5배), 표준편차도 큰 것(1.2배)으로 나타나 민원 접수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됨
 - 보상을 더 받은 피해자가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보상 금액과 실제 보상의 차이 때문일 수 있음
- 2016년부터 2019년 발생한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 치료비와 합의금, 가·피해자의 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해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가 40대 이상일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100%이고 11~14급 상해 급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은 가해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61.8%로 가해자가 40대 이상인 경우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원 접수 없는 사고의 37.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가해자의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고 경제적 손해 대비 합의금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음
-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 등 인구·사회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료 행태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피해자의 상해 심도에 따라 보상이 객관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한방진료가 치료비, 합의금, 민원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1. 검토배경

- 본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사고 심도와 더불어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운전자의 나이, 차량 종류 등의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전용식(2019)에 따르면 사고 심도가 유사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원인은 피해자의 보상심리일 수 있음¹⁾
 - 사고 심도가 유사한 사고에서 민원 접수 여부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연령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른지를 비교함
 - 가해 운전자의 성별, 나이가 피해자의 협상(합의) 능력과 피해자의 보상 기대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험금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Doerpinghaus 2003; 2008)가 있음²⁾
-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보상 자료를 이용하여 가해 운전자의 연령, 차량 종류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한방진료 비중과 민원을 비교·분석함
 - 변동성 확대와 민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민원 접수 사고와 비접수 사고의 치료비, 합의금, 한방진료 비중을 분석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민원이 접수된 자동차보험 보상 사례 4,782건과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2016년의 17,331건을 분석함(표 1) 참조)
 - 가해 운전자의 나이, 차량 종류 등이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가해 운전자의 연령, 차량 종류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한방진료 비중, 가·피해자 민원 비중 등을 민원 접수 사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함

〈표 1〉 분석 자료의 개요

(단위: 건, %)

구분	민원 없음	민원 접수 사고				
	2016	2016	2017	2018	2019	합계
사고 건수	17,331	1,264	1,110	1,200	1,208	4,782
상해 급수 11~14급 건수	4,098	585	496	599	564	2,244
과실 100% 사고	14,349	613	554	628	719	2,514
40대 미만	6,873	641	541	566	529	2,277
한방진료 비중	37.4	54.7	56.3	57.9	60.1	57.3

주: 한방진료 비중은 상해 급수 11~14급 건수 대비 한방진료를 받은 피해자 비중임
 자료: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1) 전용식(2019. 5. 27),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필요성」,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2) Doerpinghaus et. al.(2003), "Personal Bias in Automobile Claim Settlemen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0, Issue 2, Juen 2003; Doerpinghaus et.al.(2008), "Age and Gender Effects on Auto Liability Insurance Payou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5, Issue 3, September 2008



2. 민원 접수 여부와 대인배상 변동성

○ 2016년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비교함

- 상해 등급 11~14급 피해자 기준이며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임(〈표 2〉 참조)

○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 수준도 높고(1.5배), 표준편차도 큰 것(1.2배)으로 나타남

- 2016년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84.8만 원, 합의금은 164.7만 원이고 민원이 접수된 사고의 평균 치료비 123.2만 원, 합의금 239.6만 원임

○ 민원 접수 그룹에서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별 치료비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민원 접수 그룹에서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는 40대 이상 110.6만 원, 40대 미만 137.6만 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반면 합의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민원 비접수 그룹에서도 연령대별 및 차량 종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민원 접수 그룹에 대한 추가 분석을 다음 장에서 수행함

〈표 2〉 2016년 기준 민원 접수 여부와 차량 종류, 운전자 성별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분포

(단위: 건, 만 원)

민원 여부	변수	차량 종류			운전자 연령 수준	
		국산차	외산차	합계	40대 이상	40대 미만
비접수	건수	2,892	216	3,108	1,696	1,412
	치료비	84.5 (95.1)	87.1 (98.1)	84.8 (95.3)	86.4 (96.7)	82.5 (93.7)
	합의금	164.8 (131.0)	162.8 (123.2)	164.7 (130.4)	165.9 (132.3)	163.2 (128.3)
접수	건수	260	21	281	149	132
	치료비	121.8 (116.1)	141.2 (148.3)	123.2 (118.7)	110.6 (99.0)	137.6 (136.4)
	합의금	241.4 (169.2)	217.7 (155.4)	239.6 (168.1)	231.4 (173.1)	248.8 (162.4)
합계	건수	3,152	237	3,389	1,845	1,544
	치료비	87.6 (97.6)	91.9 (104.2)	87.8 (98.0)	88.4 (97.1)	87.3 (99.1)
	합의금	171.1 (136.2)	167.7 (126.9)	170.8 (135.6)	171.1 (137.1)	170.2 (133.7)

주: 가해자의 과실 비율 100%, 피해자 상해 등급 11~14급 대상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민원 접수 그룹에서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통계치 -1.872)를 보임

자료: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3. 대인배상 변동성과 가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징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민원 접수 사고에서 배상한 치료비와 합의금, 한방진료 비율 및 민원 비중이 가해자 차량 종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

가. 차량 종류

- 가해자의 차량 종류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자 민원 비중은 가해자가 국산차를 운행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산차 운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치료비는 133.3만 원이나 외산차 운전자들이 배상한 치료비는 151.4만 원으로 약 18만 원 차이가 있고, 합의금의 경우 250만 원 내외로 나타남
 - 상해 급수 14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치료비의 표준편차가 가해 차량이 외산차의 경우 약 1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외산차를 운행한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음
 - 합의금 비율의 경우 가해자가 국산차를 운행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합의금 비율은 경제적 손해 대비 합의금의 비율인데, 경제적 손해는 치료비와 대물보험금의 합계임³⁾
 - 한방진료 비율은 국산차와 외산차에서 58%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의 37.4%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3〉 2016~2019년 민원 접수 사고의 차량 종류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분포

(단위: 건, 만 원, %)

구분		국산차		외산차	
상해급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4급	건수	872	-	120	-
	치료비	133.3	128.8	151.4	138.4
	합의금	250.6	174.9	254.7	178.1
	합의금 비율	95.6	57.6	93.6	54.6
	한방진료 비율	58.8	49.2	58.3	49.5
	민원 비중	피해자	50.0	50.0	40.0
가해자		7.6	26.5	6.7	25.0

주: 과실 비율 100%인 운전자, 피해자 상해 급수 14급 대상임. 국산차와 외산차 그룹별 치료비와 합의금, 합의금 비율, 한방진료 비율, 가해자 민원 비중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자 민원 비중의 차이는 유의미함(t-통계치 2.083)

자료: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3) 전용식(2020. 8), 「자동차보험부상 합의금 지급 사례 분석: 경미사고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31권, 통권 제100호

나. 연령대

- 운전자 연령대에 따라 비교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39세 이하)일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하고 가해자의 민원 접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 미만의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평균 치료비는 145.1만 원으로 40대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배상한 평균 치료비 127.3만 원보다 18만 원 더 많음
 - 합의금의 경우 40대 미만 가해 운전자가 평균 259.4만 원, 40대 이상 가해 운전자는 244.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미만 가해 운전자가 배상한 합의금의 표준편차가 181.3만 원인데, 이는 피해자가 14급 상해 등급이라도 40대 미만 가해자가 배상한 합의금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음을 의미함
 - 치료비와 합의금, 한방진료 비율, 민원 비중의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을수록 치료비와 합의금이 크고(합의금 비율이 높고) 피해자 민원 비중은 낮지만 가해자 민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2016~2019년 민원 접수 사고의 가해 운전자 연령대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분포

(단위: 건, 만 원, %)

구분		연령			
		40대 미만		40대 이상	
상해급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4급	건수	458	-	534	-
	치료비	145.1	132.9	127.3	127.1
	합의금	259.4	181.3	244.0	169.8
	합의금 비율	97.1	57.0	93.9	57.3
	한방진료 비율	61.8	48.6	56.2	49.6
	민원 비중	피해자	43.5	49.6	53.4
가해자		8.7	28.3	6.4	24.4

주: 과실 비율 100%인 운전자, 피해자 상해 급수 14급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 수준별 치료비와 합의금, 한방진료 비율, 민원 비중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5%, 10% 수준에서 모두 기각하는데, 각각의 통계치는 치료비의 경우 -2.15, 합의금은 -1.37, 한방진료 비율 -1.79, 가해자 민원 비중 -1.39, 피해자 민원 비중 3.13임

자료: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큰 민원 접수 사고의 대인배상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차량 종류보다는 가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한방진료 비율, 치료비, 합의금, 합의금 비율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가해자가 40대 이상일 경우에 비해 높는데, 이로 인해 합의금 비율이 높아 가해자의 민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4. 결론

- 2016년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비교한 결과,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민원 접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민원 접수 사고의 치료비, 합의금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보다 평균 수준도 높고(1.5배), 표준편차도 큰 것(1.2배)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민원 접수 사고에서 배상한 치료비와 합의금, 한방진료 비율 및 민원 비중이 가해자 차량 종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의 차량 종류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자 민원 비중은 합의금 비율이 낮은 국산차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 연령대에 따라 비교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하고 가해자의 민원 접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원 접수 사고에서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고 치료비, 합의금이 더 큰 이유는 보상심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기대 형성에 상해 심도와 더불어 가해자의 연령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자가 받은 실제 보상이 기대 수준보다 낮기(높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보임
 - 동일 상해 등급의 피해자라도 민원 접수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사고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원 접수 사고에서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 합의금 비율이 높고 민원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 등 인구·사회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료 행태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피해자의 상해 심도에 따라 보상이 객관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시점을 확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치료 종결 시점은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치료가 환자의 증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점임
 - 가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한방진료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치료비, 합의금, 민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방진료 제도 개선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